

인천 서구 공장 폐기물소각 피해

자료제공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사건개요

- 사건요지

인천 서구 한국수출산업공단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공장의 폐기물소각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2억 1,081만 5,000원의 배상을 요구.

-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장부지에서 매점을 경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섬유류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공장건물내 사무실과 경비실의 난로에서 태우거나 공장부지 공터에서 태워서 발생한 매연 등의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여름철 흐린날 밤에는 두통과 구토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건강 악화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와 재정신청 수수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섬유류 폐기물 중에 순면으로 된 것만 골라서 나무와 함께 난로의 연료로 사용한 적은 있지만 화장실 쓰레기 이외의 폐기물을 아예에서 태우지는 않았고, 도로변에서 매점을 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 일부를 임대해 주었다가 회사사정으로 매점 철거를 요청하자 신청인이 매점부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매점을 강제 철거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신청인이 일부 폐기물 소각을 문제삼아 재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으로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



2. 사실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역시 서구 ○○동 ○○○○산업단지 ○공단 지역으로 피신청인 공장은 3면이 도로에 접한 직사각형 부지에 위치해 있고 한쪽은 다른 회사 공장부지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공단 본부, 우체국 등이 있다.
- 신청인의 매점은 피신청인 공장부지 남서쪽 모퉁이에 도로와 인접하여 있었으나 철거되었으며 매점 우측에 피신청인 공장 정문과 경비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장 폐기물 현황

(1) 공장의 개요

피신청인인 ○실업(주)는 '73년에 설립한 섬유류 제품 생산가공 판매업체로서 ○○산업단지 ○공단내 3,1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950여 평의 2층으로 된 공장건물과 창고, 기숙사 등의 부속건물이 있다.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합성섬유 및 순면 등의 원단을 연간 약 56ton 사용하고 있으며 원단을 재단한 후 발생하는 폐섬유는 연간 약 8ton으로 폐기물관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폐섬유 중 일부는 장갑 제조업체 등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폐섬유를 공장내에서 난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배출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비를 지출한 근거 자료가 없었다.

'02.5월 현장조사 당시에는 검은색 비닐봉투 등에 담은 폐섬유가 창고 및 공터 등에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었고 공장부지내 공터 몇 곳에 소각 흔적이 있었으나 최근에 소각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

다. 신청인 매점 및 질병 현황

(1) 매점 현황

신청인 매점은 피신청인 ○○실업(주) 소유의 공장부지에 지은 가건물($20.9m^2$)로 상호는 '○공단 ○호매점'이며 '84.7월에 개업하였고 월 5만원의 임차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매점에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질병 및 치료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접촉성(자극성)피부염이고 '01.2.20일에 처음 내원하여 '01.3.21 일까지 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환자진술에 의한 발병일은 '00.12.20 일로 진단하고 있다.

접촉성 피부염 이외의 질병 치료여부를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한 바 있는 두통, 구토증세나 기타 다른 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전문가 의견

소각물질의 확산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은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유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접촉성피부염 발생부위가 겨드랑이, 음낭주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위에만 부유 소각물질에 의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의료원의 진단서에서도 체부 백선(Tinea Corporis)을 완전히 감별진단하지 못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진단서는 부유 소각물질 노출과 접촉성 피부염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 제품의 위험성을 살펴보면 소각시에 발생되는 여러 열분해산물 등이 건강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합성섬유의 위험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 물질의 소각은 호흡기 질환의 건강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합성섬유의 소각물질에 반복적인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과관계

가.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건강 피해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폐섬유 소각으로 인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신청인의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하였을 개연성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 제품의 위해성으로는 소각할 경우 호흡기 질환의 건강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두통 및 구토증상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두통 및 구토증상을 비롯해서 접촉성 피부염 이외의 다른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거나 치료한 적은 없다는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건강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은 건강 악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폐섬유 소각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 악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장부지내에서 십수년간 매점 을 경영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폐섬유 일부를 소각함으로 인해 다소의 불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이를 수인하고 피신청인 소유의 공장부지에서 매점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폐기물 소각 매연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폐기물관리법제15조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 · 군 ·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배출하고,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